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98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1.

발 의 자 : 강득구 · 김 현 · 이정현
노종면 · 박상혁 · 김예지
서미화 · 김태선 · 강경숙
이학영 · 최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·손상이나 의료기관 점거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, 간호조무사, 의료기사 및 환자 등에 대한 폭행·협박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은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·손상이나 의료인 등을 향한 폭행·협박 등이 있을 때 의료인 등을 대피시키고 해당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인 등과 같이 현행법상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폭행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,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(死傷)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로 인하여 해당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현행법상 의료 환경에서의 보호대상에 보안인력을 포함하고

보안인력이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·손상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·협박 등의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보안인력을 보호하고 이들이 그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행위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)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간호조무사 및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”를 “간호조무사,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및 제36조제1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제지행위에 대한 면책) 제36조제1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이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를 제지(制止)하여 발생한 사상(死傷)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지행위 면책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를 제지하는 경우부

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)</p> <p>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, <u>간호조무사 및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·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2조(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간호조무사,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및 제36조제1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12조의2(제지행위에 대한 면책)</u> <u>제36조제1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이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를 제지(制止)하여 발생한 사상(死傷)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